

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	153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3. 5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 안 사 유

- 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중 법간 상충되는 조항에 대한 조례 개정임.

2 주 요 골 자

- 도시계획원 발급조항 삭제 (국토이용관리법에서 수수료 징수 조항 명기)
- 국민체육진흥광고물등 올림권 관련조항 삭제 (안 제5조 참조)

3. 참 고 사 항

- 강원 법무 02124 ~ 98 ('93.3.24) 호로 정비안 시달 ——— 별 청
- 시정조정위원회 부의 ————— '93. 4. 29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

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.

[별표 1] 수수료액표 제10호중 다음을 삭제한다.

○ 도시계획확인원. 단, 도시계획도 또는 지적도 사본첨부의 경우	1 필지	400 원	도시계획도 사본첨부시 700원으로 함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[별표 3] 위생관계영업허가등재교부수수료액표 제2호중 "이용사및미용사법 제8조에"를 "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